



## 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

- ① 제7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
 ② 제1항에 의한 여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. (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에 “√” 표시합니다)

여신과목 (여신종류)	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 (팩토링채권)	거래구분	한도거래
여신(한도)금액	금		원
여신개시일	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여신기간 만료일	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개별여신기간	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하되, 최장 180일 이내로 합니다.	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	%
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+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%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처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		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9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%로 합니다. 연체가산율이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% 연체가산율이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% 연체가산율이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%	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
여신실행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결제대전 및 회수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실행시에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 제10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  
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## 제11조 감액, 정지

-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,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9조에서 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
    -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   -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-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
    -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
  - 본인 또는 거래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
    -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,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(2단계 이상 등)한 경우
    -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“부적절/의견거절”로 제시된 경우
   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
    -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,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.  
 ③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,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## 제12조 대출금의 변제 등

- ① 본인이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.
- 제8조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.
 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때.
-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 제13조 통지 의무

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 거래처의 재산, 경영, 업황,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.

## 제14조 양도·질권설정의 금지

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.

## 제15조 담보권의 이전

본인은 은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, 인적담보(근 담보권을 포함합니다)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

### 제16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구 분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
부채비율	%	%	%	%	%
자기자본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
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
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, 임대
 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 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 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 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  2. 지배주주의 출자
 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### 제17조 자료의 제출 등

- ①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 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  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연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ISO,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 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-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 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1. 외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
  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  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### 제18조 협의사항

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.



#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## 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」을 위한 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자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**제1조 (서류의 제출)** 본인은 대출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제출서류  
가. 외상매출채권 대출신청서  
나.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 
다.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
-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①항의 서류를 귀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- 거래처(구매업체)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상기 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2조 (입금계좌 지정)**

대출금 또는 외상매출채권 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

계좌번호 : \_\_\_\_\_ 예 금 주 : \_\_\_\_\_

**제3조 (개별대출의 실행)**

-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전산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(이하 "원 약정서"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 \_\_\_\_\_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전산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)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
-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**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**

- 원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
- 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행에게 담보 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 원 약정서 제8조2항의 환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

**제5조 (대출의 제한)**

-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약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'거래처의 협력업체(본인 포함)에 대한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'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**제6조 (정보제공의 동의)**
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"거래처"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**제7조 (면 책)**

-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비에 따르기로 합니다.

**제8조 (상환 의무)**

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인터넷뱅킹 등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**제9조 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**

-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 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  -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
  -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
-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**제10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**

본 추가약정, 원 약정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합니다.



#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

## 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\_\_\_\_\_ 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매출채권거래를 위하여, 판매기업이 \_\_\_\_\_ 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은행과 판매기업의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과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2조 (양도할 대상채권)

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(이하 "대상채권"이라 합니다)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

대상채권의 범위	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 및 추가약정(이하 "여신거래약정"이라 합니다)에 따라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일체의 외상매출채권
기본계약	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과 현재 및 장래에 체결한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

### 제3조 (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)

-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.
-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
-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4조 (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)

-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하고,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
-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, 은행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### 제5조 (변제충당 및 정산)

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은 금원이 있으면 판매기업이 지칭하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 단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6조 (통지의무)

판매기업은 물품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판매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, 전쟁,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매출채권대전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### 제7조 (특약사항)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, 추가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, 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

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본인(채무자 겸 채권양도인) \_\_\_\_\_ (인)

주 소

채권양수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\_\_\_\_\_ (인)

주 소

구매기업(중심기업)정보

업 체 코 드 \_\_\_\_\_

중 심 기 업 명 \_\_\_\_\_

중 심 기 업 사 업 자 번 호 \_\_\_\_\_

